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 12.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비살균 액란 사용시 가열살균·멸균을 의무화하고, 식품 중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살균 액란 사용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신설[안 제2. 2. 31)]

- 1) 비살균 액란을 사용하여 빵류 등 제조 시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 2)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열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안 제5. 11. 11-1

3) (6) ③, 제5. 11. 11-1 3) (6) ⑧, 제5. 11. 11-1 4) (4), 제5. 11. 11-1 4) (9)]

-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 2)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장질환자용 단백질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개정
- 3) 염증성 장질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99) 뷰프로페진, (389)

플루벤디아마이드, (397) 플루오피람]

- 1)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리 필요
- 2) 뷰프로페진 등 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자우편 mfd4797@korea.kr,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0000-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0000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 2. 중 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살균 액란 사용 후 최종제품 완성 전에 가열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제5. 11. 11-1 3) (6) ③ 중 “단백질은 제품 1,000 kcal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을 “단백질은 제품 1,000 kcal당 30g 이상”으로 한다.

제5. 11. 11-1 3) (6) 중 ⑧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품 1,000kcal 당 단백질은 39g 이상(다만, 단백질 가수 분해물 또는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는 30g 이상), 비타민K는 35 μ g 이상, 셀레늄은 30 μ g 이상이어야 한다.

제5. 11. 11-1 4) (4) 중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를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 11. 11-1 4) (1) 중 “(2)~(9)에”를 “(2)~(10)에”로 하고, 같은 호 11-1 4) 중 (9)부터 (11)까지를 각각 (10)부터 (12)까지로 하고,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을 예방·보충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소화·흡수가 용이하도록 제조·가공한 영양조제식품을 말한다.

별표 4 (99) 뷰프로페진(Buprofezin) 중 “쌀 0.5”를 “쌀 0.4”로 한다.

별표 4 (389)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중 “쌀 0.5”를 “쌀 0.1”로 한다.

별표 4 (397) 플루오피람(Fluopyram)] 중 “밀 0.9[†]”를 “밀 0.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 11. 11-1 3) (6) ③의 장질환자용 단백질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2. 별표 4 중 (99) 뷰프로페진 중 쌀, (389) 플루벤디아마이드 중 쌀, (397) 플루오피람 중 밀의 개정규정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1. 카. 1) 가) 중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을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가공기준	2. 제조·가공기준
1) ~ 30) (생 략)	1) ~ 30) (현행과 같음)
<신 설>	31)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 식품에 비살균 액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살균 액관 사용 후 최종제품 완성 전에 가열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3. ~ 제4. (생 략)	제3. ~ 제4. (현행과 같음)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특수의료용도식품 (생 략)	11. 특수의료용도식품 (현행과 같음)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조·가공기준	3) 제조·가공기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질환별 영양조제식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때 질환별 영양	(6) ----- -----

현 행	개 정(안)
요구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영양 성분 외의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
(5)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균형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 따른다.	-----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의 단백질은 제품 1,000 kcal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인 되도록 하고, 단백질은 단백질 가수 분해물 또는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공급한다.	③ ----- 제품 1,000 kcal당 30g 이상이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u>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품 1,000kcal 당 단백질은 39g 이상(다만, 단백질 가수 분해물 또는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는 30g 이상), 비타민 K는 35μg 이상, 셀레늄은 30μg 이상이어야 한다.</u>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4) 식품유형	4) 식품유형
(1)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균형영양조제식품)	(1)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균형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	-----

현 행	개 정(안)
지하거나 또는 질병, 수술 등의 사유로 저하된 체력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하며, (2)~(9)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 (2)~(10)에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u>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u> <u>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을 예방·보충하고</u> <u>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소화·흡수가 용이하도록</u> <u>제조·가공한 영양조제식품을 말한다.</u>
(9) ~ (11)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11-2 ~ 11-3 (생 략)	11-2 ~ 11-3 (현행과 같음)
12. ~ 24. (생 략)	12. ~ 24. (현행과 같음)
제6. ~ 제9. (생 략)	제6. ~ 제9. (현행과 같음)
[별표1] ~ [별표2] (생 략)	[별표1] ~ [별표2] (현행과 같음)
[별표 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1) ~ (98) (생 략)	(1) ~ (9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99) 뷰프로페진(Buprofezin) (생 략) 쌀 0.5	(99) 뷰프로페진(Buprofezin) (현행과 같음) 쌀 0.4
(100) ~ (388) (생 략)	(100) ~ (388) (현행과 같음)
(389) 플루벤디아마이드 (Flubendiamide) (생 략) 쌀 0.5	(389) 플루벤디아마이드 (Flubendiamide) (현행과 같음) 쌀 0.1
(390) ~ (396) (생 략)	(390) ~ (396) (현행과 같음)
(397) 플루오피람(Fluopyram) (생 략) 밀 0.9 ⁺	(397) 플루오피람(Fluopyram) (현행과 같음) 밀 0.2 ⁺
(398) ~ (446) (생 략)	(398) ~ (446) (현행과 같음)
주1. ~ 주6. (생 략)	주1. ~ 주6. (현행과 같음)
※ 잔류허용기준 폐지 농약 잔류물의 정의 (생 략)	※ 잔류허용기준 폐지 농약 잔류물의 정의 (현행과 같음)
[별표5] ~ [별표6] (생 략)	[별표5] ~ [별표6] (현행과 같음)